

문서번호	감사실-966		수석팀장	감사2부장	감사실장	감사	
보존기간	10년						
결재일자	2017.03.07.		협 조				
공개여부	비공개(5)						

특정감사 결과보고

-단체보험 유형선택 등-

2017. 3.

목 차

I. 감사실시 개요.....	1
1. 감사배경 및 목적.....	1
2. 감사대상.....	1
3. 감사 중점사항.....	1
4. 감사기간 및 인원.....	1
II. 감사결과.....	2
1. 신고내용.....	2
2. 감사초점.....	2
3. 관련규정.....	2
4. 감사결과.....	3
5. 감사자 의견.....	7
III.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.....	8

1. 감사배경 및 목적

이번 감사는 공사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하여 2017. 2. 9. 19:07 부패신고센터(레드취슬)에 신고가 접수되었다.

이에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.

2. 감사대상

이번 감사는 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인(■■■■의 처)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□□□□지역본부 ♠♠지사 국토정보직 3급 ○○○, ☺☺지사 국토정보직 5급 ◎◎◎(이하 ‘◎◎◎’이라 한다), □□□□지역본부 운영지원처 ■■■■■(이하 ‘■■■■■’이라 한다)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.

3. 감사 중점사항

이번 감사는 신고인 및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에 따른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4. 감사기간 및 인원

이번 감사는 2017. 2. 15. 감사인 2명과 ○○시 소재 제과점에서 신고인 면담을 통해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, 같은 해 2. 16.과 2. 24. 2일간 감사인 2명을 투입하여 □□□□지역본부에서 관련 직원을 조사하였고, 감사실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.

1. 신고내용

□ 단체보험 유형선택에 관한 사항

- □□□□지역본부 ♥♥지사 국토정보직 5급 □□□(이하 '□□□'라 한다)는 2016. 2. 8.경부터 심한 두통으로 ▲▲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11일 뇌출혈 진단을 받고 장기병가 및 휴직 중 □□□의 2016년 단체보험 유형을 ○○○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B형으로 등록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함

□ 동계근무복 지급에 관한 사항

- 공사에서 □□□ 앞으로 지급되는 2016년 동계근무복(내근복, 안전보호복)을 아무런 연락 없이 ○○○이 임의대로 처리하여 동계근무복을 지급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음

□ 개인택배 전달에 관한 사항

- 2017. 1. 20.(추정) □□□□지역본부 ♥♥지사에 배달된 □□□의 개인택배(고등어)가 전달이 지연되어 내용물이 상한 상태로 받음

□ 기념품(문화상품권) 지급에 관한 사항

- 2016년 12월 □□□에게 배부된 기념품(문화상품권 5만원)을 ○○○이 임의대로 실습생 ■■■에게 지급하여 전달 받지 못함

2. 감사초점

- 단체보험 유형선택에 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인
- 동계근무복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인
- 개인택배 보관 및 전달의 적정성
- 기념품(문화상품권)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

3. 관련규정(지시사항)

- 「2016년도 단체보험 재가입 안내」 ♣♣♣♣처-1697(2016.04.04.)
- 「기념품(문화상품권) 배부」 ♣♣♣♣처-5551(2016.12.15.)

4. 감사결과

가. 단체보험 유형선택에 관한 사항

1) 사실조사

- ○○○○은 2013. 3. 4.부터 2017. 2. 12.까지 □□□□지역본부 ♥♥지사
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.
- ○○○○은 2016. 4. 11. 뇌출혈로 장기병가(2016. 3. 29 ~ 5. 6.) 중인 ■■■■의
단체보험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 ■■■■와 1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
연결이 되지 않았다.
- 이에 ○○○○은 2015년 ■■■■가 선택하였던 B형으로 선택할 것을
□□□□지역본부 담당자인 ■■■■에게 통보하였으며,
- ■■■■은 □□□□지역본부 직장 단체보험 담당자로서 장기병가 중인
■■■■에게 직접 의견을 묻지 않고 2016. 4. 11. ○○○○의 의견에 따라
■■■■의 2016년 직장단체보험 유형을 B형으로 선택하여 본사 ♣♣
♣♣처에 제출하였다.

2) 신고자 면담

- (2017. 2. 15. 대면) 단체보험을 재가입 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
■■■■에게 필요한 실비보험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으로 선택하여
금전적 피해를 입힌 ○○○○의 업무처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 요구
- (2017. 2. 20. 11:37 유선) 신고인에게 2016년 단체보험 임의 선택에
따른 금전적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¹⁾제출 요구

1) 2016. 4. 1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입원 실비 내역서 등

- (2017. 2. 23. 14:04 유선) 신고인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으며, 2016년 단체보험 유형선택 시 ■■■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위 건에 대해서는 불문처리해 줄 것과 2017년 단체보험 재가입 시 원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함

나. 동계근무복 지급에 관한 사항

1) 사실조사

- ♣♣♣♣처에서는 2016년 동계근무복(내근복, 안전보호복)을 2016. 11. 17. 기관(지사)별 배송하여 직원에게 지급하였다.
- 신고인은 ○○○이 휴직 중인 ■■■의 2016년 동계근무복 신청을 임의대로 처리하여 2016년 동계근무복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확인²⁾결과 휴직 중인 ■■■에게는 2016년 동계근무복이 지급되지 않았으며, 휴직자는 복직 후 신청하면 동계근무복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을 신고인에게 하였다.

2) 신고자 면담

- (2017. 2. 15. 대면) ○○○이 ■■■의 2016년 동계근무복 신청을 하지 않아 동계근무복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○○○의 업무 처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 요구
- (2017. 2. 23. 14:04 유선) 신고인에게 휴직자는 복직 후 동계근무복

2) 2016년 동계근무복 배부(♣♣♣♣처-5118: 2016.11.18.) [붙임] 2016년 동계근무복 배부 명단

신청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, 신고인은 동계근무복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인정하였음

다. 개인택배 전달 지연에 관한 사항

1) 사실조사

- ○○○은 2017. 1. 20.(추정) □□□□지역본부 ♥♥지사에 ■■■ 앞으로 배달된 택배(고등어)를 수령하였다.
- ○○○은 택배 포장지에 생물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내용물을 사무실 냉장고에 냉동 보관 하면서 신고인 또는 ■■■에게 택배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.
- ○○○은 2017. 2. 1. 신고인으로부터 개인택배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항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5:30 ☒☒☒택배(63016-0309-2501)로 ■■■에게 배송하였으며, 다음 날 신고인이 택배를 수령 후 내용물(고등어)이 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.

2) 신고자 면담

- (2017. 2. 15. 대면) ○○○이 2017. 1. 20.(추정) ♥♥지사로 배달된 ■■■의 개인택배(고등어)를 냉장고에 보관 하지 않고 사무실에 방치하였다가 신고인의 항의 전화통화 후 배송하였으나 배달(2017. 2. 2.)된 고등어가 상하여(증명할 근거자료 없음) 버렸다고 주장하며 ○○○의 업무처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 요구

- (2017. 2. 23. 14:04 유선) 개인택배 전달 지연에 관한 사항은 신고인의 입장을 이해할 여지는 있으며, 전달 지연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은 일부 인정되나 감사실에서 조사·조치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음

라. 기념품(문화상품권) 지급에 관한 사항

1) 사실조사

- ♣♣♣♣처에서는 2016. 12. 19.경 직원의 자기계발 및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2016. 12. 15.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※※※※※※※※상품권(이하 ‘기념품’이라 한다)을 1인 1세트(1만원권 5매)를 배부하였으며, 각 기관에서는 수령 후 소속기관 직원에게 즉시 배부토록 지시³⁾하였다.
- ○○○○은 2016. 12. 19.경 본사로부터 ♥♥지사³⁾에 배부된 기념품을 수령하여 직원에게 배부하였으나 휴직 중인 ■■■의 기념품은 배부하지 않고 본인의 서랍에 보관하였다.
- ○○○○은 2017. 2. 3. 신고인으로부터 ■■■에게 배부된 기념품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항의 전화에 착각하여 실습생 ■■■에게 주었다고 답변하여 신고인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이라는 의심을 품게 하였으며,
- 같은 날 ○○○○은 본인의 서랍에 보관된 ■■■에게 배부된 기념품을 확인하고 ■■■에게 발송(일일특급: 13016-01##-7295)하였으나 업무상횡령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는 신고인은 수령을 거부(13564-02##-1539)하고 반송하여 ○○○○이 보관하고 있다.

3) 기념품(문화상품권) 배부(♣♣♣♣처-5551: 2016.12.15.)

2) 신고자 면담 내용

- (2017. 2. 15. 대면) ○○○이 2016. 12. 19.경 ■■■에게 배부된 기념품을 실습생 ■■■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는 업무상 명령으로 엄중한 책임을 요구
- (2017. 2. 23. 14:04 유선) 실습생 ■■■에게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조사내용⁴⁾을 설명하였으며, 신고인은 업무상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수긍하였으나 기념품지급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○○○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요구

5. 감사자 의견

- ○○○은 휴직중인 ■■■에게 배부된 기념품을 우편등기 등의 방법으로 즉시 배부하여야 하나 평소 ■■■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 서랍에 방치(2016. 12. 19.~2017. 2. 3./46일)하였으며,
- 또한, ○○○은 ■■■에게 배부된 기념품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부패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지사 행정담당자로서의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.
- 따라서 ○○○은 「기념품(문화상품권) 배부」(♣♣♣♣처-5551: 2016.12.15.) 지시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「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」 제5조 (처분사유) 제1항 제1호 “상급기관의 지시 및 예규,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”에 해당한다.

4) 실습생 ■■■는 기념품(문화상품권)이 배부되기 전 2016. 11. 30. 퇴사하였으며, 2017. 2. 16. ■■■와 통화하여 기념품(문화상품권) 수령 사실이 없음을 확인

Ⅲ

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

□ 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(단위: 건, 명, 원)

처분지시 일련번호	감사대상기관 (관계기관/부서)	건 명	처분요구			감사자
			행정상조치	재정상조치	신분상조치	
1-1	□□□□지역본부 (☺☺지사)	기념품 지급 업무 소홀(상급기관의 지시 위반)			1	김○○ 이○○
계	1				1	

붙임: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. 끝.

일련번호	1 - 1	감사자	○○○, ○○○	공 개(○) 비공개()
신분상 조치인원	1명	재정상 조치방법		재정상 조치금액
수감부서 (처리할 부서)	○○○○지역본부 (운영지원처)	처분요구일자		회신기일

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

문 책 요 구

제 목 기념품 지급 업무 소홀

관 계 기 관 ○○○○지역본부

문책 대상자 ○○지사 국토정보직 5급 ○○○(전 ○○지사)

문 책 종 류 문책(주의)

문 책 사 유

위 직원은 2013. 3. 4.부터 2017. 2. 12.까지 ○○○○지역본부 ○○지사에서
지사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.

「기념품(문화상품권) 배부」(○○○○처-5551: 2016. 12. 15)를 보면 “직원의
자기계발 및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2016. 12. 15.(목)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
한국문화진흥 문화상품권(이하 ‘기념품’이라 한다)을 1인 1세트(1만 원권 5매)를 배부
하였으며, 각 기관에서는 수령 후 소속기관 직원에게 즉시 배부”토록 지시하였다.

따라서 일선지사 행정담당자는 배부 받은 기념품의 매수 등을 확인 후 소속기관
직원에게 즉시 배부하여야 했다.

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6. 12. 19.경 ○○지사에 배부된 기념품을 수령한 후
①휴직 중인 ○○○와 평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부하지 않고 사무실

서랍에 방치(2016. 12. 19~2017. 2. 3. / 46일)하였으며 또한, ②○○○에게 배부된 기념품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⁵⁾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부패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행정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「기념품(문화상품권) 배부」 지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「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」 제5조 제1항 제1호⁶⁾의 규정에 해당한다.

조치할 사항 ○○○○지역본부장은

① ○○지사 국토정보직 5급 ○○○을 「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」 제5조에 따라 신분상 조치(문책: 주의) 처분하시기 바랍니다.

② 국토정보직 5급 ○○○에게 배부되어 ○○지사에 보관 중인 기념품을 즉시 회수 하여 ○○○에게 배부하시기 바랍니다.

5) 2016. 11. 30. 퇴사한 실습생 ○○○에게 지급하였다고 답변(기념품 배부일: 2016. 12. 19.경)
6) 상급기관의 지시 및 예규,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